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황숙희 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사무과장,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2. 17. ~ 12. 21.)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사무과장,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의사업무 운영을 위해 본 규칙을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